

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

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,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7. 10.

연 천 군 수

1. 목 적

-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2. 관련근거

-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
-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3조(보호구역의 지정)

3.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

시 설 명	주 소	보호구역 지정구간	비고
초성3리 경로당	청산면 초성리	L=430m	신규
연천군 노인회관	연천읍 옥산리	L=300m	신규

※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(031-839-283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 진 대 지

건 명	노인보호구역 지정 (초성3리 경로당)	위 치	청산면 학담로 151 (초성리 242-1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사 진 대 지

건 명	노인보호구역 지정 (연천군 노인회관 신축중)	위 치	연천읍 옥산리 807-17번지 일원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

